

#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안)

의 안 번호	94 - 34
-----------	---------

제출년월일 : 1994. . . .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도시개발과)

## 1. 제안 사유

-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구단위 도시계획업무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 일정 범위의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등에 대한 현장 및 책임 행정을 동시 구현함으로써
- 신속한 도시계획 업무수행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주민의 기대심리에 부응함은 물론 민원해소를 위해
- 자치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함

## 2. 근거 법령

-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지방도시계획위원회) - '91. 12. 14개정
- 도시계획법 제76조(운영세칙) - '91. 12. 14개정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 '92. 7. 1개정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의 3(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 '92. 7. 1개정
- 대구직할시 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규칙 - '94. 9. 30개정

### 3. 주요 골자

- 기 능(안 제2조)
  -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제4조)
  - 위 원 수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
  - 위원구성 : 위원장 - 구청장, 부위원장 - 부구청장
    -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 전체위원의 1/3이하(5명), 도시국장은 당연직
    -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전체위원의 2/3이상(12명)
  - 임 기 : 2년(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은 제외)
    - ※ 소위원회 -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위원장은 호선)
  
- 운 영 - 비공개 회의 개최(안 제6조, 제9조, 제11조)
  - 의결 정족수 :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수 당 : 「대구직할시 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

### 4. 제정조례(안) : 별 첨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 4 조(위원의 임기) 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의결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9 조(수당등의 지급) 달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직

할시달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13 조(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